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291

발의연월일: 2025. 3. 24.

발 의 자:윤준병·신영대·박민규

정동영 • 박홍배 • 조계원

김한규 · 민병덕 · 박지원

김태년 · 김태선 · 허종식

송옥주 · 서영교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수소자동차, 전기자동차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 며,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것에 비해 수소자동 차의 충전시설 등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임.

때문에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·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나.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임.

이에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수소자동차의 충전 시설 구축을 가속화하고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의 보급을 계 속 지원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).

법률 제 호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"2025년" 을 "2030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	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		
일부개정법률 부칙	일부개정법률 부칙		
제2조(유효기간) 제58조의11 및	제2조(유효기간)		
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은 <u>2025</u>	<u>2030</u>		
<u>년</u>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	<u>년</u>		
다.			